###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0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 : 김도읍 • 안병길 • 강기윤

김정재・구자근・이 용

이철규 · 정운천 · 권명호

김성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을 시행할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사 및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조세감면 역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상 선정과 절차등이 복잡해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해외진출한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 할 경우 고용 및 투자 등의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시행 및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조세감면에 대한 임의규정을 개정하여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의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해외진출기업"을 "매년 해외진출기업"으로, "작성할수 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매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중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부터 제16 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	제9조(실태조사) ①
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u>해외진출기업</u>	<u>매년</u> 해외진출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	기업
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②
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	
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	
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u>할</u>	<u>매년</u>
<u>수 있다</u> .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u>한다.</u>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	제11조(조세감면)
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	
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
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u>조세를 감면할</u>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부 터 제16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